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 유형 및 사례

【유형1】 월급 의사(Pay Doctor) 고용 형태

□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의 진료없이 임의로 입원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

(사례) '12.2. 서울송파경찰서 발표

사무장 A는 의사 B를 9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고용하여 OO정형외과를 개설하고,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아님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차트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보험금 3,600만원을 부당 수령

【유형2】 의료법인명의 대여 형태

□ 사무장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을 개설한 후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허위 입원환자를 양산

(사례) '11.8. 부산지검 동부지청 발표

OO의료법인 대표 C는 사무장들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1,000~3,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병원 개설 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15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이렇게 개설된 사무장 병원은 보험설계사 등과 결탁하여 환자를 유치

【유형3】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 악용 형태

□ 사무장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그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가짜환자와 공모

* 의료생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생활협동운동단체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이 가능

(사례) ’12.7. 청주지검 충주지청 발표

OO의료생협 이사장 D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부속의료기관으로 OO의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허위입원을 유도하였으며, 가짜 환자들은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 2억 9,000만원을 부당 수령